

2025년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모집 공고

소공인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2025년도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1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 (필독) 신청 전 유의사항 안내

- ★ 본 사업 신청 시 **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직접 회원가입 및 신청하여야 합니다. ★**
- 본 사업은 소상공인 온라인정책지원 플랫폼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해 신청·접수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24 사업신청 바로가기 <https://www.sbiz24.kr/>
- ※ 소상공인 24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시 반드시 대표자 명의로 진행하여야 하며, 신청인 정보와 대표자 정보가 다를 시 원활한 사업접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발생사유에 관계없이(시스템 오류 등) **공고마감 이후 추가접수는 절대 불가**, 제출서류 및 정보관련, **공단에서 별도의 보완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 ※ 필수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서류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표자 이외 신청으로 인한 마이데이터 오류는 서류 미제출로 간주합니다.
-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동의 시 필수서류 제출을 간소화 할 수 있습니다.
- 정부 지원사업 중 유사사업과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 사실과 다름이 확인 될 경우 선정 후에도 선정취소 및 정부 지원금 환수조치 할 수 있습니다.
- 협약기간 전/후 발생하는 사업비 지원 불가합니다.(예시 : 협약기간 전/후 카드결제, 송금한 내역 등)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성장의지 및 성장잠재력을 갖춘 유망소공인의 판로개척 지원을 통해 우수 소공인으로 성장촉진 및 매출향상에 기여

나. 지원규모 : 290개사 내외 * 업체당 국비 최대 18백만원 지원

다.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10월 31일

* 일정에 따라 사업기간 변동 가능성 있음

라. 신청방법 : 온라인(www.sbiz24.kr) 신청

마.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지원(국비 80% 이내, 자부담 20% 이상)

바. 지원내용 : 국비 한도 내 바우처 항목 선택

* 사업신청 시 선택한 바우처에 따라 사업비 구성하여 계획서에 정확히 기재 필수

< 판로개척 지원항목 >

항목	내용	지원한도(만원)	
		국비 (80%)	자부담 (20%)
전시회 참가	·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비(집기 및 부스임차비 등) 지원	1,800 이내	450 이상
마케팅	· 국내·외 마케팅지원(온·오프라인 광고지원 등) · 국내·외 홍보물 제작지원(카드로그, 리플릿, 영상제작 등)		
매장입점	· 국내·외 오프라인몰(백화점, 아울렛, 팝업스토어 등) 입점위한 집기임차비, 판매수수료 비용 등 지원		
브랜드강화	· 브랜드 디자인개선, 브랜딩 설계 등		
기타	· 인증 지원, 통번역, 국제운송비, 무역보험 등		

* 사업비는 공급가액 기준이며, 부가가치세는 자기부담금 외 별도 부담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 및 결과물 산출까지 협약기간 내 진행 必

*** 선정소공인 대상 역량강화교육 등 추가 프로그램 지원 예정

2. 신청자격

가. 지원대상 : 소공인(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곳 (업종코드 : C10~C34) [붙임2], [붙임4] 참고

나. 자격요건

○ 신청마감일('25.2.21.)기준 아래의 지원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구분	내용
휴·폐업 및 부도	○ 공고 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세금 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참여 제한	○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지원제외 업종	○ [붙임3]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3.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5. 1.24.(금) ~ 2.21.(금) 18:00까지(기한엄수)

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접수 * 홈페이지 주소: www.sbiz24.kr

구분	신청방법
사업조회	(1단계) <u>소상공인24 홈페이지(sbiz24.kr) 접속</u> → 회원가입(대표자 명의로 회원 가입 必, 공동대표인 경우 주 대표자로 가입) → 로그인 (2단계) 홈페이지 상단 "지원사업신청"→"공고조회"→ "2025년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선택
신청서 제출	(1단계) "2025년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선택 (2단계) [업체선택] [개인정보동의] [마이데이터제공동의] [자가진단] [신청정보작성] 등 각 탭 순서대로 진행 (3단계) 신청정보 작성 후 신청완료(완료 후 수정불가)
참고사항	▶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신청기간에만 가능 ※ 마감일에는 접속자 폭주로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유에 관계없이(시스템 오류 등) 마감 이후 추가접수는 절대 불가합니다.

* 소상공인24 회원가입, 사업등록, 사업신청 등 문의사항은 '1644-5302'을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 신청서류

구분	연번	제출서류	
필수 서류	1	▶ <서식1> 수행계획서(8장이내)	
	2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법인의 경우, 법인/대표자 각각 제출 필수	
	3	2개 中 택 1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必)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 24년도 서류발급 불가한 경우 23년도 서류로 대체 (단, 공고시작일 기준 창업기간 1년 미만인 경우, [붙임5]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 서 제출가능)
선택서류 (해당시 제출)	4	▶ 가점증빙서류 * 가점 항목별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가점항목 참고	
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아래(5~8번) 추가 서류 제출 필수 * 마이데이터 동의 시 모두 자동 제출되어 편리합니다.(동의 시 제출란 없음)			
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필수서류	5	▶ 사업자등록증명원(업태 : 제조업 必)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6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신청일 기준 기간 유효하여야 하며, 소상공인 명시 필수	
	7	3개 中 택 1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必)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최근 1년 부가가치세 신고서 ▶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최근 1년 사업장현황신고서
	8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택 1)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월별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모든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하며 유효해야함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마이데이터 제공동의서, 자가진단항목은 신청단계에서 시스템으로 입력

라. 서류 발급정보 ※ 아래서류 관련 문의사항은 발급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급서류	발급처	사이트 주소 및 연락처
- 사업자등록증명원 - 표준재무제표증명 - 부가가치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신고서 -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1577-1000

마. 신청절차 : ①업체선택 → ②개인정보 동의 → ③마이데이터 제공동의
→ ④자가진단 → ⑤신청정보 작성 후 신청완료(신청완료 후 수정불가)

[모집공고 및 신청 안내]

<사전준비>

- ① **소상공인 24 회원가입**(소상공인 마당 아이디/비번 활용 가능)
 - 주 대표자 명의 가입(공동대표 신청 불가) 후 본인 인증 필수
 - ※ 기존 소상공인마당 회원인 경우라도 주 대표자 명의를 아니라면 신규 회원가입 필수
- ② **기관·업체 정보등록**
 - 마이페이지 → 기관/업체정보 → 신규업체 등록/기존업체 등록 택1
 - 등록 후 대표자의 상호명/휴대전화번호/업종 등 변동사항 있으면 수정필수
 - ※ 기존정보가 등록되어있더라도 변동사항이 있으면 최신정보로 업데이트

<신청절차>

- ① 지원사업신청 → 공고조회 → 검색어에 공고명 조회(단어로 검색 가능)
- ② 공고가 조회되면 신청 공고 클릭 → 지원신청 버튼 클릭
- ③ 신청완료 후에는 수정 불가

4. 선정방법

가. 평가절차 : 평가(서류, 발표) → 사업선정

- (서류평가)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검토하여 추진계획, 제품역량 등 평가항목에 따라 외부평가위원의 서류평가 진행

* 신청자격 미충족, 필수서류 미제출 소공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발표평가) 과제책임자(대표자 또는 사업담당자)가 제출한 신청서류를 토대로 사업계획 발표 후 평가항목에 따라 질의응답 진행

- (선정) 평가를 통한 고득점* 순위에 따라 최종 선정

* 서류평가 점수 40%, 발표평가 점수 60%를 합산한 점수

나. 평가항목

- (평가) 평가항목별 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서 류 평 가	사업추진기반	■ 사업 이해도, 사업 수행 타당성 등	20
	사업추진계획	■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수행계획의 구체성, 사업실현 가능성 등	30
	제품역량	■ 기술 및 품질경쟁력, 시장성 및 비교우위력, 가격경쟁력 등	35
	기대효과	■ 성장가능성, 지속가능성 등	15
	가점	■ 백년소공인, 집적지구 소공인, 풍수해보험 가입자, 첫걸음 소공인, 일회용품 대체품 제조소공인, 패스트트랙 지원자	5
총 점			100(+5)
발 표 평 가	사업수행역량	■ 사업 이해도, 수행의지, 역량 보유 등	25
	사업관리능력	■ 수행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 예산편성 및 조달계획의 타당성, 사업 목표 실현가능성 등	30
	제품경쟁력	■ 제품의 시장성, 보유제품의 차별성, 가격경쟁력 등	35
	기대효과	■ 성과창출 및 지속가능성, 파급효과 등	10
총 점			100

5. 가점

구분	가점항목(점수)	가점기준	제출서류
1	백년소공인(5)	○ 중기부에서 선정한 백년소공인	• 소진공 확인 (제출서류 없음)
2	집적지구 소공인(2)	○ 도시형집적지구 내에서 지정된 업종으로 사업장을 영위중인 소공인 - 세부 업종 및 지역은 [붙임1] 참고	• 소진공 확인 (제출서류 없음)
3	풍수해보험 가입자(1)	○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 '풍수해보험' 가입 소공인 * 풍수해보험 보험기간이 신청마감일 기준 유효한 경우 인정	• 풍수해보험 보험증권 (소상공인 보험)
4	첫걸음 소공인(3)	○ 본 사업의 수혜 경험이 없는 기업 * '15년 소공인 맞춤형 성장 지원사업, '16~20년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사업 수혜기업은 가점제외	• 소진공 확인 (제출서류 없음)
5	재기지원 패스트트랙(1)	○ 채무조정자 패스트트랙 연계 지원자	• 소진공 확인 (제출서류 없음)

* 신청마감일 기준('25. 2. 21)으로 해당여부 검토

** 가점한도는 최대 5점이며 신청서 작성 시 해당 가점분야 체크 필수(미체크시 가점부여 無)

6. 추진절차(안)

공고	신청·접수	서류평가	발표평가
중기부, 소진공 '25년 1월	▶ 소진공, 소공인 '25년 1월~2월	▶ 평가위원회 2~3월	▶ 평가위원회 2~3월
협약	사업수행	결과보고	사업비 정산
공단↔소공인 3월 중	▶ 소공인 3월~10월	▶ 소공인→공단 10월 중	▶ 소공인↔공단 11월 중

*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7. 접수 · 문의처

가. 문의처

구 분	담 당 자	문 의
시스템 문의	소상공인24	☎ 1644-5302
사업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 **회원가입(대표자 명의) 및 시스템 사용방법 사전숙지 필수**

** 공고 이후, 소상공인24 회원가입, 사업등록, 사업신청 등 문의사항은 위 문의처를 통해 확인 요망

8. 유의사항

선 정	▶ 발표평가 일정은 이메일로 개별통지, 서류상 기재착오·연락두절·신청자 미확인·안내문 미숙지 등 착오 시 선정평가 제외 ▶ 선정된 소공인은 협약체결일 전까지 별도의 사업비 통장에 자기부담금 전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미입금 시 선정·지원 취소 ▶ 선정된 소공인은 협약체결시 국고보조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선정·지원 취소
기 타	▶ 공고마감 이후 추가보완은 불가하며, 필수서류(수행계획서, 부가가치세신고서 등)를 미제출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 공급업체 매칭의 경우 전문기관이 보유한 수행(공급)업체 Pool에서 선택이 가능하며, 수행가능 공급업체가 없을 경우 공급업체 추천 및 전문기관으로부터 적정성 검토를 통해 진행 가능 ▶ 협약기간 전/후 발생하는 사업비 지원 불가(예시 : 협약기간 전/후 카드결제, 송금한 내역 등) ▶ 판로연계지원의 경우, 최종선정 후 추가지원 예정이며 일부 항목은 자부담 발생할 수 있음 ▶ 선정 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등록 → 교부 → 집행 → 정산 → 반납 → 정보공시 등 일체 의무이행 필수

【붙 임】

1. 소공인 집적지구 지역 및 업종현황
2. 소공인 업종 및 기준
3. 지원제외 업종
4. 소상공인 및 업종 확인 기준
5.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양식

【서 식】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작성서류 양식

붙임1
(가점해당시) 소공인 집적지구 지역 및 업종현황

구분	지역	범위	업종코드
1	서울특별시	○ 금천구 독산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2		○ 성북구 보문동, 월곡동, 장위동, 종암동, 석관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3		○ 영등포구 문래동	• C24 (1차 금속 제조업)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		○ 종로구 봉익동, 묘동, 원남동,	• C33 (기타 제품 제조업)
5		○ 종로구 종로1·2·3·4가동, 종로 5·6가동, 창신제1동, 창신제2동, 송인제1동, 송인제2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6		○ 성동구 성수동	• C15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 C13 (섬유제품 제조업, 단 의복 제조업 제외)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7		○ 중랑구 면목동, 상봉동	• C13 (섬유제품 제조업, 단 의복 제조업 제외)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 C15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8		○ 마포구 서교동	•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9		○ 도봉구 창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10		○ 관악구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11		○ 양천구 신월동	• C15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12		○ 광진구 중곡동	• C13 (섬유제품 제조업, 단 의복 제조업 제외)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13		○ 동대문구 용신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14		○ 강북구 미아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15	부산광역시	○ 동구 범일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16		○ 금정구 서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17	인천광역시	○ 동구 송현동, 송림동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 C28 (전기장비 제조업)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8		○ 서구 오류왕길동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19	대구광역시	○ 중구 대봉1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20		○ 중구 성내동	• C33 (기타 제품 제조업)
21		○ 북구 노원동	•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22	광주광역시	○ 동구 서남동	•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3		○ 동구 충장로 4가, 5가	• C33 (기타 제품 제조업)
24	경기도	○ 군포시 군포1동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25		○ 포천시 가산면	• C32 (가구 제조업)
26		○ 양주시 남면	• C13 (섬유제품 제조업, 단 의복 제조업 제외)
27		○ 시흥시 대야동, 신천동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8		○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
29		○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 C10 (식료품 제조업)
30		○ 화성시 향남읍, 팔탄면, 정남면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1		○ 화성시 봉담읍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32		○ 안양시 관양동	•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
33		○ 여주시 오학동, 북내면, 대신면	•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4		○ 광주시 초월읍, 오포읍, 광남동	• C32 (가구 제조업)
35		○ 김포시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6		○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37		○ 화성시 동탄5동	•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8	대전광역시	○ 대덕구 오정동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9		○ 동구 정동, 중동	•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40	강원도	○ 강릉시 사천면	• C10 (식료품 제조업)
41		○ 강릉시 주문진읍	• C10 (식료품 제조업)
42		○ 인제군 북면	• C10 (식료품 제조업)
43		○ 원주시 우산동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4	충청북도	○ 청주시 상당구 중앙동	•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45	충청남도	○ 공주시 유구읍	• C13 (섬유제품 제조업, 단 의복 제조업 제외)
46		○ 금산군 금산읍	• C10, C11 (식료품, 음료 제조업)
47		○ 홍성군 광천읍	• C10 (식료품 제조업)
48	전라북도	○ 순창군 순창읍	• C10 (식료품 제조업)
49		○ 전주시 팔복동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50		○ 부안군 진서면	• C10 (식료품 제조업)
51	전라남도	○ 무안군 청계면	•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2	경상북도	○ 영주시 풍기읍	• C10 (식료품 제조업)
53		○ 경산시 진량읍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54	경상남도	○ 김해시 진례면	•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5		○ 하동군 화개면	• C10 (식료품 제조업)

※ 집적지구 내 소공인은 해당 **지역범위**와 **업종코드**가 일치하여야 함

붙임2

소공인 업종 및 기준

*통계분류포털 한국산업표준분류 10차 개정 기준

업 종			매출액 기준	상시근로자수
제조업	C10	· 식료품 제조업	120억원 이하	10명 미만
	C11	· 음료 제조업		
	C14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5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9	· 코크스, 연탄 및 석유 정제품 제조업		
	C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C21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3	·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C24	· 1차 금속 제조업		
	C25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C26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8	· 전기장비 제조업		
	C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2	· 가구 제조업		
	C12	· 담배 제조업	80억원 이하	
	C13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6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C17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8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22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7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31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3	· 기타 제품 제조업		
	C34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주업종 코드 및 항목명 확인 후 신청서 內 기재

※ 매출액 기준 업종 확인방법

- ① 최근 1년간 총 매출액 중, 반드시 '제조업' 매출비중이 가장 커야함

※ 상시근로자 수 확인방법

- ① 중소기업확인서 상 '소상공인'표기확인 ②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를 통해 확인

붙임3

지원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착한 임대인'에 한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 신청 가능 ('20.12.~'21.12.) (4page 참고)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표준산업분류	업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0)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상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소상공인 확인 기준

1 지원대상 확인 개요

- 소상공인이란, 소기업^① 중 소상공인^②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③를 의미함
- 따라서, 해당 업체의 소기업 범위(매출액) 확인 후,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범위를 확인하여 정책자금 대상여부를 확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① (소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② (소상공인) 주된 업종별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③ (영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법인, 개인사업자)이므로 비영리기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법인등록되어 있는 영리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2 소기업 확인방법

- 주업종의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이 주업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8조>

- ‘매출액’이란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의미함. 다만, 업종 특성 상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등을 말함
- 간편장부 작성 대상기업 등 재무제표(손익계산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음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다음의 매출액 확인 서류 징구

구 분	매출액 확인 서류
간 이 과 세 자	사업자등록증(명)상의 과세유형(간이과세자) 확인
일 반 과 세 자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면세사업자(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 직전 또는 해당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하였거나 세무신고 제외대상 등의 사유로 인해 매출액 확인서류 등의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 기업이 확인 신청서에 관련 항목을 직접 작성(신청기업이 사업계획서 등에 기입한 매출액으로 확인)함으로써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참고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5조제4항>

<평균매출액등 산출방법>

사업기간	산출방법
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③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가.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	창업일·합병일·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③ 소상공인 확인방법

-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①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업 종	기 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참고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②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①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 및 감사(사외이사 제외), 개인기업 대표

-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 ③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④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㉓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함

사업기간		산정방법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아래의 경우 제외)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에 속한 경우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예시>

구분	창업일	자금신청일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예시1	'18. 11. 20	'20. 3. 25	(직전 사업연도) '19년 1월~'19년 12월
예시2	'19. 2. 5		(최근 12개월) '19년 3월~'20년 2월

④ 상시 근로자 수 확인 서류 및 확인 방법

구 분		내 용
확인 서류	상시 근로자 無 (택 1)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상시 근로자 有 (택 1)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 (고용.산재), 소상공인확인서 등
확인방법		■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 "확인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월수만큼의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제출받아 상시 근로자수를 파악 (예시) 업력 12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이 '19.2.26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2018년 1월~12월까지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제출(12장) ■ 최근 1년 이내 지역가입자(상시 근로자 無)에서 직장가입자(상시 근로자 有)로 전환된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실내역 포함 된 과거이력 나오도록 발급)와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함께 제출받아 확인 (예시) 창업일: '17년 11월 2일, 신청일: '19년 1월 제출기간: '18년 1월 ~ 12월 직원 수가 창업일 당시 0명, '18년 5월부터 1명 고용 (필요서류)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실내역 포함) 2018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지역가입자로 상시근로자 없음 ②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18년 5월~12월) 2018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대표자 제외한 근로자 1명임을 확인

※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사업장명칭이 해당 소상공인업체인 경우 반드시 상시 근로자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함

④ 소상공인 지위 유지 등

-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개정 2021.12.30.>
-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다음 ①~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에서 제외한다.
 - ① 소상공인이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②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③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④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 ⑤ 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업종 구분 방법

□ 업종분류 기준

- 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원칙에 따르며, 세세분류(산업분류 5자리)에 의한 업종을 기준으로 함.
 - * (예)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아이템)으로 구분 : (25294] 주형및금형제조업
- **(사업자등록 업종)** 사업자등록증(명)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함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 주된 업종 판정 시 연매출액 비중 확인방법

❶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중 기타매출(국고보조금, 개발보조금 등)은 제외하고 산정

(예) 제품매출 > 상품매출 → 제조업으로 분류

제품매출 < 상품매출 → 도소매업으로 분류

❷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이 없는 경우, 최근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홈택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직접 신고 시에는 본인) 확인)의 매출액(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 부가가치세신고서 : 일반, 간이과세자 - 과세표준명세 업태 및 매출액 확인

- 사업장현황신고서 : 면세사업자 - 수입금액(매출액) 명세 업태 확인

❸ 위 1항 또는 2항의 매출액 비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징구

붙임5**(해당시)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양식**

※ 다음과 같이 주업종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합니다.

최근창업한 자로서 당기(직전회계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포함)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포함), 면세수입금액증명 등 매출액 증빙자료 구비가 불가능한 경우, 주업종확인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업체명 (상호)	대표자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명) 상 업태(업종) (예 : 제조업+도소매업)		
주업종명(업종코드)* (예 : 식료품 제조업(C10))		

* [붙임2] 소공인 업종 및 기준을 확인하여 부합하는 업종명과 코드기재

위와 같이 실제 영업 중임을 확인하고, 후에 위 사실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국고보조금 지원 불가, 관련 국고보조금 전액회수와 더불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명)

소 상 공 인 시 장 진 흥 공 단 앞

① [서식 제1호] 수행계획서 0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수행계획서

	기 업 명		설립일	년 월 일		
업체 개요	마케팅 역량	국내	전담조직	☐ 있음 ☐ 없음	전담인력	☐ 있음 ☐ 없음
			홈페이지	URL :		
		해외	전담조직	☐ 있음 ☐ 없음	전담인력	☐ 있음 ☐ 없음
			홈페이지	URL :		
	서비스 역량	국내	콜 센 터	☐ 있음 ☐ 없음	A/S 센터	☐ 있음 ☐ 없음
		해외	콜 센 터	☐ 있음 ☐ 없음	A/S 센터	☐ 있음 ☐ 없음
회사소개		※ 회사의 비즈니스모델, 당사의 주요 경쟁력, 차별점 등을 위주로 5줄 이내 작성 ※ 회사소개서(카탈로그) 있을 시 별도 첨부				
제품 개요	제품구분	☐ 식품	☐ 의류	☐ 패션잡화	☐ 애견용품	
		☐ 생활가전	☐ 주방가전	☐ AV기기	☐ PC	
		☐ 멀티미디어	☐ 차량용품	☐ 조명기기	☐ 가구/홈인테리어	
		☐ 유아용품	☐ 스포츠용품	☐ 건강보조기기	☐ 생활용품	
		☐ 주방용품	☐ 뷰티용품	☐ 산업용기계/장비/부품	☐ 기타()	
		자체공장	☐ 있음 ☐ 없음			
	생산유형	☐ 직접(자체)생산	☐ 위탁생산(아웃소싱)			
	생산방식	☐ 선주문-후생산	☐ 선생산-후판매			
	사업모델	☐ B2G	☐ B2B	☐ B2C		
	제 품 명	※ 대표제품에 대하여 작성				
	제품가격	※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소비자가격 기재				
	제품기본정보	※ 제품 특징을 한 줄로 간략하게 기술				
	제품구성					
	주판매처					
제품 개요	제품실사					
		※ 제품 특징이 명확하게 보이는 사진 첨부				

	제품특징상세 및 경쟁력	※ 타사 제품과는 차별화되는 자사만의 제품 경쟁력에 대하여 1,000자 이내 작성. (시장성, 가격경쟁력, 품질 및 기술력, 디자인 및 창의성 등 자사 제품역량을 상세히 기술) (예시) 1. 가격경쟁력 : 자사 독점 생산라인 구축으로 경쟁기업대비 n원 저렴 2. 제품의 특수성 : 친환경 원재료 사용 등																																														
	인증 · 특허 현황	<table border="1"> <thead> <tr> <th>명칭</th> <th>발급기관</th> <th>내용</th> <th>취득일자</th> </tr> </thead> <tbody> <tr><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r> </tbody> </table> ※ 특허, 시험성적서 등 제품관련 주요 인증현황을 10개 이내로 기재				명칭	발급기관	내용	취득일자																																							
명칭	발급기관	내용	취득일자																																													
사업 신청 개요	판로개척노력 (현황)	※ 당사가 속한 시장의 환경분석, 판로개척 및 확대를 위한 사전준비 (전담인력채용, 인증획득, 홈페이지구축, SNS활용 등) 기술																																														
	지원배경 및 기대효과	※ 사업을 신청하게 된 이유, 신청유형(국내 or 해외)에 맞는 사업목표(목표시장 및 목표 매출액) 및 기대효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																																														

	제 품 명			
	희망판로	☐ 국내판로	☐ 해외판로	
	신청항목	☐ 전시회참가	☐ 마케팅	☐ 매장입점
		☐ 브랜드 강화	☐ 기타	
	스타소공인 육성	☐ 참여 희망 ☐ 참여 미희망 * 스타소공인에 선정된 소공인은 육성팀(플랫폼사, 컨설턴트 등)과 매칭되어 상시컨설팅, 프로모션 진행 등 판로 쏠단계 추가지원		
수행계획 및 세부목표	※ 희망하는 신청항목에 체크(☑)하고, 반드시 선택한 항목으로 수행계획과 달성목표를 상세히 기술			
	(예시) 1. 전시회 참가 - 예산 : 625만원 (국고보조금 500만원, 자기부담금 125만원) - 수행계획 : △△제품의 유럽수출을 위해 '21. 0월 0일부터 ~ 0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국제□□박람회 참가 및 바이어 상담회 참가 예정. 외국어 홍보동영상을 상영하여 참가효과를 극대화할 계획 - 목표 : 1만불 이상 판매, 바이어 5개곳 이상의 수출상담 및 5만불 이상 수출계약 체결 2. 마케팅 - 예산 - 수행계획 : - 목표 :			
향후계획				